성주군청 및 읍·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읍 · 면사무소의 명칭 ·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시하고 행정자치부의 ‘16년도 복지허브화 관련 읍·면사무소 명칭변경지침을 반영하여 초전면사무소의 명칭을 초전면 행정복지센터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복지허브화 관련 면사무소 명칭변경(안 별표)

- 초전면사무소 ⇒ 초전면 행정복지센터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6조, 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제14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[붙임]참조
-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- 성별영향평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2017년 하반기 복지허브화 사업 대상지인 “초전면사무소”를 “초전면 행정복지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